



同 床 異 夢



陳 今 變

〈在美辦理士・藥學博士〉

美國의 特許 및 著作權업계의 유일한 專門誌인 BAN'S PATENT TRADEMARK & COPYRIGHT JOURNAL의 지난 4月 5日字(Vol. 29 No. 727)에 한국의 한백(Han Baek)무역회사와 11개 회사가 미국의 Union Manufacturing CO와의 마호병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抗告審에서 勝訴한 判例를 첫머리에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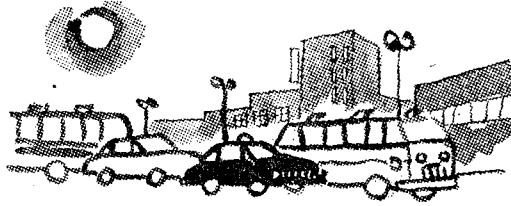
즉 "Determination of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relating to unfair trade practices and trademark infringement are entitled to res judicata effect (Union Manft. Co. V. Han Baek Trading Co. 4/4/85)가 主文이다.

거슬려 올라가면 美 Union Co는 20년간 이 마호병의 TM을 "Uno-Vac"으로 使用해 왔는데 한백 Co 등 한국의 12個會社가 이 상표를 侵害(§43(a), Lanham Act, 15 USC 1125(a)하고 부정경쟁 방지법 (§337, Tariff Act, 1930, 19USC 1337)에 저촉된다고 ITC에 提訴하였던 것이다. 實로 US ITC는 짧은 기일내(6個月쯤)에 自國原告나 被告側이 有利한(?) 判決을 내는 對美輸出國들이 不滿이 많은 기관이지만 被告인 한국 會社들이 多幸히 勝訴하고 이에 Union CO가 聯邦高等法院에 抗訴했던 事件이다. 그러나 既判事項을 지지하여 한국회사들이 이긴 재판이다.

우리 Law Firm에서 每週있는 Wednes Day Seminar에 이 判例가 Topic이 되어 法的인 贊反論이 치열한 同床의 자리에서 나는 美市場에 수출하기 為하여 안간힘을 다하는 한국의 輸出役軍들에 한없는 勇氣를 준 主審인 Newman 部長判事에 눈시울이 뜨거울 程度로 감사를 드리는 異夢을 꾸고 있었다.

20餘名의 美國의 Attorney들과는 달리 그것도同一한 圓卓에서,同一한 점심인 Sandwich를 짓들인同一한 主題의同一한 Seminar에서 비록 저들과 내가 피부색같이 Write와 Yellow의 差異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들의 法的인 判例의 論爭과는 全然달리 法은 어쨌던 한국의 회사들이 수출장벽을 뚫고 수출을 할 수 있는 現實에만 關心이 있는 나와는 다른바 같은 침대에 자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格이 아닐 수 없었다.

事實近間에 미국의 輸出赤字에 對하여 계속 Mass com에서 떠든다. 日本과의 수출전쟁에 對하여



今年 들어도 1~3月의 3個月間에 \$ 32 Billior의 赤字를 기록했단다. 그래서 美國은 모든 行政力を 動員하여 보호 규제 무역의 Regulation을 量產하지만 日本의 罷에는 巨大한 美國이 손을 드는 形便이다.

우선 日本產 自動車가 TV 선전은 勿論 길가에 범람할 뿐만 아니라 日常品의 전자제품에서 증장비에 이르기까지 日本商標의 흥수를 느낄 수 있다. 이들 日本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Rome Wasn't in a Day”라는 말과 같이 하루아침에 이룩한 것은 아니다.

정확히 12年前 筆者가 한국인으로서는 最初로 美特許廳 Academy 연수를 받으러 왔을 때 이들은 벌써 이때에 知的所有權의 보호에 投資하기始作하였다. 그때는 8名의 日本辨理士 및 큰 會社의 特許要員이 연수에 臨하였고 美特허청 주변에 많은 日本의 特許면들이 常駐하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도 우리 사무소에 5名이 와 있지만.

이 日本이 지금은 지난 1984年度 美特許廳 年報에 依하면 1983年에 총 24,375件의 公業소유권을 美國에 출원하여 全外國 출원의 36%를 點하고 있는 것을 보면 對美輸出의 成功 秘決의 하나가 特許 및 著作權의 Intellectual property의 活用임이 짐작이 간다(参考로 1983年的 한국인의 對美출원은 117件으로 全外國 출원의 0.2%에 해당함).

日本의 한 전자회사가 美辨理士사무소에 년 100만불 정도의 수임료를 支拂한다는 現實을 우리에게는 너무도 實感이 나지 않는 딴세상 이야기 같다.

이번 우리 사무소의 Summer 工業所有權研修에 한국의 現代自動車 Co 및 金星 Co에서 2~3名의 trainee가 온다는 소식은 참으로 고무적이며 기대가 큰일이다. 하루속히 技術革新의 口號에서 實際로 과감한 投資를 아끼지 않는 個人, 會社, 政府가 될 때 美國의 수출목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두에서 언급한 제2의 한국사건 判例에 對하여 다시는 美辨理士들과 달리 筆者가 同床異夢의 공상을 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위싱톤 Birch, Stewart, Kolasch & Birch 특허법률사무소에서〉